

의안번호	제 698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증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29일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698
----------	-----

제출연월일 : 2017년 9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이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위·수탁 협약기간이 종료(2017. 12. 31.) 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운영

나. 추진 계획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12.31.(3년간)
- 선정기준 :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청소년단체
  - ※ 現 수탁기관 : 재)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 '15.1.1~ '17.12.31)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주요사업
  - 충청북도 중장기 청소년쉼터 관리·운영
  - 가출청소년의 중장기 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심리·정서·진로 등의 상담지원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민간위탁 추진일정

- 중장기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0월
- 수탁기관 선정 방침 수립 : '17. 10월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7. 11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7. 11월
- ※ 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중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17. 12월

**3. 참고사항**

- 위·수탁 추진계획(안) 및 관계 법령

**-충청북도 증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추진계획(안)**



**여성정책관실**

# 충청북도 증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추진계획(안)

「충북증장기청소년쉼터」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17. 12. 31.)  
됨에 따라 향후 추진계획 보고임.

☞ 現, 수탁기관 : 재)한국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유지재단( '17. 12. 31.까지)

## 1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부칙 제2조(경과조치)

## 2 現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재)한국기독교장로회노회유지재단(대표 : 이건희)
- 수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3년)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 166. 3층
- 규 모 : 연면적 145m<sup>2</sup>(침실 2, 식당, 상담·사무실, 활동실)
- 운영방식 : 가족형
- 위탁내용
  - 충북증장기 청소년쉼터(3년이내 보호)운영
  -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관리 책임 및 인계
  - 수탁단체의 건물 전용면적 일정규모(1인당 11m<sup>2</sup>) 이상 자부담확보 및 시설 관리 운영 등

### ❖ 증장기 쉼터 운영 연혁

- ▶ '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모 : 한국청소년총북연맹 선정
- ▶ 1차 운영('05. ~ '09. 4.) : 한국청소년총북연맹
- ▶ 2차 운영('09. 5~'11.12.) : 재)한국기독교장로회노회유지재단 공모 선정
- ▶ 3차 운영('12. 1~'14.12.) : 상기재단 재위탁
- ▶ 4차 운영('15. 1~'17.12.) : 재)한국기독교장로회노회유지재단 공모 선정

※ 2017. 12. 31. 현재 위탁기간 종료

## 3 위·수탁 추진계획

- 증장기 쉼터 운영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0월
- 수탁기관 선정방침 수립 : '17. 10월
  - 위탁방법, 위탁기간,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 수탁기관 모집·공고 : '17. 11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17. 11월
  - ※ 위원회 구성 : 9명 이내
- 증장기 청소년쉼터 위수탁 협약 체결 : '17. 12월

## 4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 체결 후 협약 내용 공증
- 위수탁 현황 홈페이지 공고 및 안내공문 발송

## <참고자료 : 관련규정>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그 운영을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3. 27>
-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3. 27>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